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2024년 1차 직원 채용 공고

재단법인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서는 돌봄의 미래를 함께 그려갈
직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5일

재단법인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서 접수 중인 각 채용공고 및 채용분야 중복지원 불가

구분	채용분야		선발 예정인원	임용 예정일	제한사항	급여
경력 경쟁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관	관 장	1명	2024. 3. 1.	지역, 연령 자격, 경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센터장	1명	2024. 3. 1.	지역, 연령 자격, 경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관장 10호봉 이내)

※ 최종합격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이 있으며, 수습 평가를 실시함.

2 분야별 직무내역

구분	분야	직무내역
경력 경쟁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관	관 장 • 노인복지관 운영 총괄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센터장 • 센터 운영 및 관리 등 총괄

3 근로조건

구분	내용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관	근무장소 •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대전광역시 중구 테미로 26)
	근무시간 • 월~금 / 09:00~18:00(주40시간, 휴게시간 1시간)
	급여수준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복리후생 • 예산 범위 내 수당 별도 지급
	임용일 • 2024. 3. 1. 예정 ※ 위수탁 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함.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근무장소 • 대전광역시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13층)
	근무시간 • 월~금 / 09:00~18:00(주40시간, 휴게시간 1시간)
	급여수준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관장 10호봉 이내)
	복리후생 • 사회서비스원 관련 규정 및 내규 준용, 예산범위 내 수당 별도 지급
	임용일 • 2024. 3. 1. 예정 ※ 위수탁 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함.

※ 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기관 내부규정에 따름.

경력인정 관련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 기재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 등으로 증빙이 가능**하여야함
- 경력(재직)증명서 상 경력은 지원자격 요건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근무기간, 소속부서, 담당업무 등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함 (해당기관 직인 필수)
 - ※ 경력(재직)증명서 양식에 담당 업무란이 없는 경우, 기관의 인사담당자가 해당경력을 수기로 작성 후 제출 가능(인사담당자의 성명, 직장 전화번호 필수 기재)
-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제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동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국세청)와 해당 기간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할 경우 인정함
- 2개 이상의 경력기간을 합산함에 따라 1개월 미만 일수가 발생할 경우, 전체경력을 **일수로 계산하여 충족여부**를 판단함
 - ※ 입사지원서 경력사항에 담당업무를 입력한 경우, 증명서에 해당내용이 반드시 있어야만 인정
- 지원서 작성 당시 재직 중인 경우, 경력기간은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일자 기준까지로 산정**함
- 증빙하지 못하는 경력을 지원서에 기재한 경우 허위기재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서류 발급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함
- 경력요건 충족여부 판단을 위한 경력기간은 **경력(재직)증명서의 경력기간 중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혹은 4대보험 중 1개)와 중복되는 기간만**으로 산정함
 - ※ 채용 시 경력인정과 근로계약 시 호봉산정의 기준은 각 지침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구분		내용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① ~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24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③ 공고일 이전까지 대전 소재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대학은 수도권경비계획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함 ※ 단, 대전 지역에서 고등학교 졸업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제외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 참고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관	관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 이상으로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 정년(6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학력 제한 없음 • 아래 각 호 모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 15년 이상인 자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정년(60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학력 제한 없음
	센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회복지사 자격증 또는 의료인 면허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시설 또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사회복지사 자격증 또는 의료인 면허증을 소지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가점사항

구분	가점대상자	가산점수	증빙서류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해당하는 장애인	5점	장애인증명서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10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처: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 가점은 전형별 과락점수 통과자에 한해 인정하며, 서류전형 이후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경우만 인정함.

※ (취업지원 대상자) 채용분야별 모집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산점 미부여(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단,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가점 부여함.

6

전형방법 및 합격기준

구분	해당 직위	평가요소	합격자 결정	심사방법 및 합격기준	
서류전형	공통	공통 및 분야별 자격요건 등 심사	적격/부적격	- 내부위원 2명 구성 및 심사	
필기 전형	인성 검사	공통	책임감, 성실성, 적극성, 창의성 등	적격, 부적격	- 40점 미만 또는 부적격 시 불합격 * 평가요소 및 적격 여부 기준은 전문업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인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참고자료로 활용
면접전형	공통	발표면접(50점)	평균점수 60점 이상인 자	- 면접위원 4~5명 구성외부위원 1/2 이상 - 경험기반 구조화 면접(블라인드 면접)	
		전문성(10), 발전성(10) 창의성(10), 윤리관(10) 성실성(10)			
최종 합격	공통	면접전형 평균 점수	면접전형(100%) 고득점자 순	-	
결격확인	최종 합격자	자격증빙, 채용신체검사서 등 증빙자료	자격 사실 및 결격사유 유무	- 제출 증빙서류 확인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 (적용기준) 최종합격자 발표 후 6개월 이내 퇴직할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허위 증빙서류 발생 경우 등
- (운영기간) 최종합격자 발표 후 6개월 까지
- (예비인원) 채용분야별 3배수 범위 내에서 예비합격자 순위 부여

입사포기 관련 안내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가 입사포기할 경우 입사포기각서 제출을 원칙으로 함
(단, 미제출 혹은 지연제출로 차순위자에게 발생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 각서 없이 입사포기 처리)
· 입사포기 의사를 밝히고 24시간 이내 각서 미제출 시
· 각서 외 증빙,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

7

전형절차 및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채용공고	2024. 1. 15.(월) ~ 1. 30.(화)	
원서접수	2024. 1. 22.(월) ~ 1. 30.(화) 18:00까지	
1차 전형	서류전형	2024. 1. 31.(수) ~ 2. 1.(목)
	결과발표	2024. 2. 2.(금)
2차 전형	필기전형	2024. 2. 6.(화)
	결과발표	2024. 2. 8.(목)
3차 전형	면접전형	2024. 2. 14.(수)
최종합격자 발표	2024. 2. 16.(금)	
최종합격자 서류 제출	2024. 2. 19.(월) ~ 2. 21.(수)	
임용	2024. 3. 1. 예정	

※ 상기 일정은 시 협의 내용에 따라 조정기간 단축, 공고 및 접수일 조정 등)될 수 있으며, 조정 시에도 지침에 따른 공고 및 접수 기간 등 준수

※ 채용규모, 채용전형, 선발배수 등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전형별 합격자 발표는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기관 사정에 따라 최종 합격자와 협의하여 임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8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원서접수 관련 유의사항

※ 진위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해당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심사위원 등에게 제공되지 않음.

- 지원서 접수는 마감일(시간) 내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 접수번호가 부여된 지원서만 유효하므로 가급적 미리 접수 요망함.
- 지원서는 1인 1회만 제출가능하며, 동일분야 또는 타 분야 중복지원 불가함.
- 지원자격 충족 해당여부는 공고일 이전 기준으로 판단함.
-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의 착오, 누락, 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특히 취업지원대상자 및 우대사항 해당자 등의 가점적용 시 입사지원서 입력정보를 기준으로 관계기관 등에 진위여부를 판단하므로 반드시 유의하여 정보 입력(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불합격 처리).
- 입사지원서 불성실 기재자(비속어 사용, 자기소개서 항목 중 공란이 있는 경우, 의미 없는 문자 나열 또는 동일 내용 반복, 타사명 작성오류, 자격요건 미충족자) 및 허위기재자는 감점 또는 부적격 처리됨.
- 모든 증빙서류는 지원자격 요건 충족여부 확인 용도로만 활용되며, 편견요소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등은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모든 증빙서류는 해당정보를 육안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낮은 해상도 또는 첨부파일 오류(파일 손상) 등의 사유로 진위여부 확인 불가시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최종제출 완료 후에는 지원서 수정이 불가하오니 제출 전 충분한 확인 및 검토 후 제출 요망.

○ 접수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접수방법
2024. 1. 22.(월) ~ 1. 30.(화) 18:00까지	온라인 접수 (https://dj-pass.recruiter.co.kr)

※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및 채용 관련 응대가 어려움에 따라 필요 시 사전 확인 요망

○ 제출서류

구분	대상	제출서류 ※ 제출마감일 이전 1년 이내 발급한 서류만 유효	제출기간
서류전형 응시자	공통	① 입사지원서 1부(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② 자기소개서 1부 ③ 가산점 증빙서류 각 1부(해당자)	2024. 1. 22. ~ 1. 30.
	관장 센터장	① 직무수행계획서 1부	
필기전형 합격자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제출 필수		2024. 2. 9. ~ 2. 13.
	공통	① 주민등록초본 1부 - 병역사항 및 과거주소 변동사항 포함 발급 -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하게 등록된 자격만 인정 ② 자격증 사본 1부	
	관장 센터장	① 직무수행 및 운영계획 관련 발표 자료(PPT) ② 경력증명서 각 1부 ③ 경력인정 증빙서류 각 1부	
면접전형 합격자	합격자	① 증명사진(JPG 파일) ※ 메일(recruit@dj.pass.or.kr) 제출('응시번호/이름'기재) ② 채용신체검사서 ③ 공정채용 확인서 ④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2024. 2. 19. ~ 2. 21.
		※ 일반채용신체검사서는 '일반건강검진결과통보서'로 대체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를 채용 신체검사로 대체 가능함.(공단 홈페이지 내 발급) ※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발급 방법 (홈페이지) 공단 홈페이지 - 건강iN - 나의 건강관리 - 건강검진정보 - 검진결과조회 (지사) 본인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지사 방문하여 발급 (검진기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수검자에게 발송(본인이 검진받은 검진기관에 해당)	

※ 자격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필요 시 별도 요청 가능

9

유의사항

■ 응시자 불이익 유의사항(임용취소 등)

- 시험과 관련된 모든 공지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재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고된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기재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사자 책임으로 하며, 응시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의 확인을 거칠 예정으로 허위 내용 확인 시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됩니다.
- 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임용이 취소**됩니다.
- 시험 부정행위, 채용비위(인사청탁, 허위 사실 판명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응시자격을 박탈**하고 **향후 5년간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채용시험 지원을 제한**합니다(임용된 다음이라도 합격 취소).

■ 블라인드 채용 제도 위반사항 검토 기준

-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채용은 공정한 채용을 블라인드 채용방식에 따라 인적사항을 직·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경우 고의 유무, 위반의 경중 등을 불문하고 블라인드 채용 위반, 불성실 기재 또는 공정성 저해로 전 항목 불이익(불합격 처리)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경험·경력사항'과 관련된 직장명 등은 기재 가능하나, 학교 근무경력 기술 시 블라인드 사항의 직접적인 유추 여부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구분	기준 위반 예시
성명	홍씨 집안의(성)~, 저는 지원자 홍길동입니다.
성별	결혼 후 아내(남편)과 함께 생활하며~,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어머니)가 되고자, 형(누나, 언니, 오빠)인 제가~, 간호사인 어머니와 언니를 보며~, 판매여왕 호칭을 얻었습니다~, 여대를 졸업하고, 여성동아리(여학생회)~, 여자축구대회~, 군복무를 현역(운전병, 군수병, 전경, 의경 등)으로 입대하여~ 의무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성별 직접적 유추 가능/장교 복무는 언급 가능)
연령	올림픽(월드컵)이 개최되던 해에 태어나, 30년간 살아오면서~
출생/출신지	부산에서 태어나 평생을 자라 왔으며~, △△ 지역 기질 등
출신학교	서울대학교 회장으로서~, 서울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장으로서~, 대학교 치어리더 동아리 '비상'에서~
가족관계	아버지께서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시고~
성실성	특정 문자 반복 기재 또는 의미해석 불가(특수기호, 자음/모음 반복 등), 질문 의도와 상관없는 내용, 타 기관 제출할 용도로 작성한 경우(기관명 오타 포함)
공정성	본인 성명, 가족 성명 등을 기재한 경우
■ 코로나19 관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완치되지 않은 지원자는 면접시험 응시 불가(코로나 자가격리 의무 준수) - 면접시험 시 마스크를 미착용(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2023. 5. 11. 코로나19 종식 선언) 	
■ 서류반환 청구 및 이의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알림마당 / 채용입찰공고 / '채용서류반환 및 이의신청 안내' 공지) 참고 	
※ 문의: 경영지원부 채용 담당자(042-331-8981)	

공통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12.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취업할 수 없다.
13.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4. 경력, 학력 및 이력 사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하여 채용된 자
15.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자
16. 기타 사회통념상 채용제한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 응시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제19조제1항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③ 종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응시자 해당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 안내(2020) 준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장기요양기관 설립·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7.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의결격사유),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벌칙)에 해당하거나, 형법 제28장(유기과학대의죄), 제40장(횡령과배임의죄, 단 360조 점유이탈물 횡령은 제외)의 죄를 범한 경우
-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위반하여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대표자 및 시설장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